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참고 자료			
보도	2017. 8. 3.(목) 조간	배포	2017. 8. 1.(화)	
담당부서	보험감리실	이창욱 실장(3145-8220), 서영일 팀장(3145-8240)		

제 목 : 금융꿀팁 200선 - ⑯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기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2016.9.1일 개설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예순번째 금융꿀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기”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선 - ⑯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기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제3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 (<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금융꿀팁 200선 – ⑥⓪

제 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기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1) 한지수(40세, 직장인, 가명)씨는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 피해 차량의 수리비 200만원이 발생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였음. <p>당장 큰 돈을 부담하게 된 한지수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2) 박영훈(45세, 자영업자, 가명)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A보험회사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음에도 B보험 회사의 상해보험 가입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였음. <p>그러나 2년 후 카페에서 타인에게 커피를 떨어뜨려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두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하였으나,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서야 중복 가입한 것을 후회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3) 박소영(56세, 주부, 가명)씨는 '12년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16년에 이사하였으나 동 사실을 별도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음. <p>'17년에 보일러 누수로 아랫집의 벽지를 배상해주고 도배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만을 보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사 사실을 보험증권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음.</p>

제 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기
<p>☞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세요</p> <p style="text-align: center;">【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핵심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②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③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④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파인”에서 확인 가능 <p>꿀 팁</p> <p>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p> <p>*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p> <p>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p> <p>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유익합니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 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p>	

꿀 팁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예시

- 1)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 피해차량 수리비
- 2)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 휴대폰 수리비
- 3) 피보험자가 키우는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 치료비
- 4)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 아랫집 수리비

※ 일부 보상(대물 등)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예: 2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

①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 하여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16.1월 보장한도가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A사, B사) 가입하였는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받게 됩니다.

손해배상금	보험금 수령액
치료비 300만원	300만원 (A사) 150만원 (B사) 150만원

꿀 팁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 다만, 두 개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중복가입시 보장한도는 늘어나게 됩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치료비가 1억 6천만원일 경우에는 각 회사로부터 8천만원씩(총 1억 6천만원) 지급받게 됩니다.

②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 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하여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	보험사고 예시	유의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배상책임	방화, 다른 사람과 싸워 상해를 입힌 경우 등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	지진으로 거주주택의 창문이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 (다만, 과실비율 산정을 통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액 결정 가능)
피보험자가 사용하고 있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	친구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노트북을 파손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용하는 물건의 원래 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실제 보험금의 지급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꿀 팁

③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입니다. 그러나 동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④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 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사 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꿀 팁

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는 “파인”에서 확인 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하여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거나 “<http://fine.fss.or.kr>”을 직접 입력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가입한 보험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